

## 발전기금관리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본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교육, 연구 및 장학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되는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, 도서, 교육·연구·업무용 물품과 골동품·고서화 등의 문화재 등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부금(품)을 말한다.

②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발전기금 :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,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한 기금
2. 지정발전기금 :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 지정하여 건축, 장학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(단, 기부자가 수혜자를 지정한 장학금, 연구비, 행사지원을 위한 일회성 기금 등은 제외한다.)

**제3조(주관부서)** 기금의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는 발전기금센터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, 2019.10.01., 2020.7.1.)

**제3조의2 (업무분장)** (삭제 2019.4.30.)

### 제2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

**제4조(설치)** 기금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발전기금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, 2014.3.28., 2016.6.16., 2018.7.1., 2018.8.31., 2019.10.01., **2023.02.25.**)

②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1.11.1., 2012.8.1., 2014.3.28., 2016.6.16., 2017.12.1., 2018.7.1., 2019.10.01., 2021.6.1., 2022.4.1., **2023.02.25.**)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문, 기금 기부자, 학부모, 사회저명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

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은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,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 
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·심의한다.

1.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영 및 관리
3.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4. 기금 유치 공헌자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3장 기금 관리

**제9조(접수)** ① 기금은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, 입출금 관련 사항은 사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② 기증물품은 주관부서가 소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, 현 시가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인수하며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③ 부동산은 법인과 협의하여 인수하되, 자산평가는 지방세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참고한다.

**제10조(기금의 운영)** ① 기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른 교육사업에 사용하고, 교비 운영에 준하여 운영한다.

② 기획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21.6.1.)

③ 기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

**제11조(회계처리)** ① 기금은 본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,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한다.

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4장 기부자 예우 및 공헌자 보상

**제12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**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

**제13조(기금 유치공헌자 보상)** ①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모금에 공헌한 자(단체 포함)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(개정 2021.11.1.)

② 제1항의 기금모금에 공헌한 자(단체포함)는 본교 교직원외의 외부인(단체포함)을 포함하며,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(개정 2021.11.1.)

## 제5장 기타

**제14조(제반경비)**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한다.

**제15조(기타사항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,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, 제9조 제1항 제2항, 제10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